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

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검 사】이영재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 외 1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62일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각 1일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 13,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 ☆☆통상에 관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에 대한 ◎◎◎◎◎병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5, 피고인 16에 대한 정보통신망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이유】

]

[이유]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